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 ◇ 난이도 : 중하
- ◇ 예상 합격선 : 90~95점 이상(상위 20%)
- ◇ 문제특징 : 이번 2020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은 평소보다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 조절차원의 문제로 5번(사무배분 원칙), 9번(권력의존 모형), 13번(지방교육자치), 14번(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 17번(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사항), 20번(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등이 있었으나 수업시간에 법령 문제를 충분히 다뤘을 뿐만 아니라 정답이 되는 지문은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점수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론을 깊이 있게 공부한 우리 수험생의 경우 10분 컷, 100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 ◇ 학습방향 :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도 나타났듯이, 지방자치론은 지방직 7급 합격을 위한 훌륭한 선택과목입니다. 다만 행정학에서의 지방자치론에 비해 법령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이론의 심화부분, 지방자치의 역사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심화학습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행정학을 하신 분이라면, 그 노력의 절반만 투입해도 10분만에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제 올해 7, 9급 시험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라는 누구도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해서 더욱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에게 힘들지 않았던 해는 없을 테지만 이 와중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평정심을 유지해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수험생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수험생분들은 2021년에는 반드시 합격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희망찬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올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 신용한 드림 -

2. 출제영역분석

지방자치의 기초적 이해	1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2
지방자치의 기본적 체계	3	지방자치의 재정	6
지방자치의 운영	4	정부 간 관계	4

3.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19	기출변형 문제	1 (20번)	신유형 문제	-
-------	----	---------	---------	--------	---

4.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짜맞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5	-	1	3	-	3	8

01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단체자치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 불린다.
- ② 주민자치 개념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주로 개별적 수권방식을 채택하였다.
- ③ 단체자치는 일정 지역 내의 행정이 주민에 의하여 행해져야 함을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실질적 요소이다.
- ④ 주민자치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형태를 뜻하며, 법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 【해설】**
- ① [X] 영·미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 불리는 것은 **주민자치**(단체자치 X)이다. 단체자치는 프랑스·독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 불린다.
 - ③ [X]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이다. 주민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 ④ [X] 주민자치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형태를 뜻하며, **정치적 의미(법적 의미 X)의 자치**라고 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단체자치는 프랑스·독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 불린다.
- ③ 주민자치는 일정 지역 내의 행정이 주민에 의하여 행해져야 함을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실질적 요소이다.
- ④ 주민자치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형태를 뜻하며,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summary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구 분	주민자치	단체자치
의 미	정치적 의미 (풀뿌리 민주주의)	법률적 의미 (민주주의와 상관관계 부정)
국 가	영·미형	프랑스·독일 중심 대륙형
자치권	국가 이전의 고유권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전래권)
강조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민주주의)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분권주의)
사무구분	자치사무·위임사무 구분 없음.	자치사무·위임사무 구분
권한부여방식	개별적 수권방식	개괄적(포괄적) 수권방식
중앙정부 통제	주로 입법적·사법적 통제 - 약한 통제 (기능적 협력관계)	주로 행정적 통제 - 강한 통제 (권력적 감독관계)
조세 제도	독립세(자치단체가 과세주체)	부가세(국가가 과세주체)
지방정부 형태	기관통합형(의회중심)	기관대립형(기관장 ↔ 의회)
자치단체	순수한 자치단체	이중적 지위(자치단체 + 일선기관)
통 제	주민통제	중앙통제

【참고】 2020 신용한 지방자치론 p.8, 9



0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영국의 의회형을 예로 들 수 있다.
- ② 의원내각제가 발달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통합형에 해당한다.
- ③ 기관대립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집행기관의 장은 주로 의회에서 선임한다.
- ④ 위원회 형태의 미국 지방자치단체와 참사회·이사회 형태의 독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에 해당한다.

- 【해설】**
- ① [O] **기관통합형**은 지방자치정부 조직에 있어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단일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유형**으로, **영국 등 영연방국가의 의회형**을 예로 들 수 있다.
 - ② [X] 일본은 중앙정부의 형태가 의원내각제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권을 갖는 **기관대립형**에 해당한다.
 - ③ [X] 기관대립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주로 주민에 의해 선출된다.
 - ④ [X] **위원회 형태의 미국 지방자치단체**는 카운티(county)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기관통합형**에 속한다. **참사회·이사회 형태의 독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에 해당한다.

▶ **올바른 지문**

- ② 의원내각제가 발달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에 해당한다.
- ③ 기관대립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주로 주민에 의해 선출된다.**
- ④ 위원회 형태의 미국 지방자치단체는 **기관통합형**, 참사회·이사회 형태의 독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에 해당한다.

03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건소 운영, 시군의 도세징수 등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가 같이 걸린 사무들이 많다.
- ② 자치사무와의 구별이 명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다.
- ③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단체위임사무에 비하여 자치적 처리의 영역이 넓다.

- 【해설】**
- ① [X] 보건소 운영, 시군의 도세징수 등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가 같이 걸린 사무들이 많은 것은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한다.
 - ② [X] 어디까지가 자치사무이고, 어디까지가 위임사무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사무들이 지방정부 사무 중 각각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개 자치사무가 50 ~ 60%, 기관위임사무가 30 ~ 40%, 그리고 단체위임사무가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③ [O]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 ④ [X]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하급기관**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단체위임사무에 비하여 **자치적 처리의 영역이 좁다**.

▶ 올바른 지문

- ① 보건소 운영, 시군의 도세징수 등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가 같이 걸린 사무들은 단체위임사무이다.
- ② 자치사무와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대개 자치사무가 50 ~ 60%, 기관위임사무가 30 ~ 40%, 그리고 단체위임사무가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본다.
- ④ 단체위임사무에 비하여 자치적 처리의 영역이 **좁다**.

summary |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구 분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개 념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 지방적 공공사무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게 위임된 사무
결정주체	지방의회 (본래의 사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입 불가)
사무처리주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 (일선행정기관의 성격)
조례제정권	○	○	×
국가의 감독	합법성 중심의 교정적 (사후)감독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교정적 감독	교정적 감독 + 예방적 감독
경비의 부담	자치단체 부담 보조금 = 장려적 보조금	공동 부담 보조금 = 부담금	국가 부담 보조금 = 교부금
사무예시	자치단체의 존립, 유지사무, 주민복지사무(상하수도, 지역민방위, 지역소방, 도서관, 주민등록, 학교, 병원, 도로, 도시계획, 쓰레기 처리 등)	보건소,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도세징수, 공과금 징수, 직업안정, 하천유지보수, 국도유지보수 등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근로기준설정, 가족관계등록, 의약사면허, 도량형, 외국인등록, 여권발급 등

【참고】 2020 신용한 지방자치론 p.74~76



04 지방자치 관계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④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한다.

【해설】 ①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대한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2. 예산의 심의·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운용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X]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1천만 원(5천만 원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방자치법 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O]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71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④ [X]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소방기본법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 올바른 지문

- ①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시·도지사는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한다.

【참고】 2020 신용한 지방자치론 p.105 ~ 113

▶ ③

05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경합성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행정수요의 충족이 불가능할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순으로 행정수요의 충족 책임이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 ②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경제성의 원칙 또는 효율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 ③ 보충성의 원칙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다투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재정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④ 포괄성의 원칙은 동종의 업무나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는 같이 배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해설】**
- ① **[X]**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기초정부 우선의 원칙을 말한다. 사무배분에 있어 기초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러하지 못한 사무는 상위 자치단체나 국가가 단계적으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② **[X]** 현지성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효율성의 원칙은 사무에 따라서는 보다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의 원칙은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위해 사무를 각 단체의 규모, 행·재정능력,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단체에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③ **[X]** 국가와 각급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서로 경합하지 않도록 사무의 소속과 그 처리의 책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것은 비경합성(불경합)의 원칙이며, 지방정부가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나 재정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충분재정의 원칙이다.
 - ④ **[O]** 포괄성의 원칙은 사무배분에 있어 동종의 업무나 상호 밀접히 연관된 업무는 같이 배분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보충성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행정수요의 충족이 불가능할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순으로 행정수요의 충족 책임이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 ②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 ③ 비경합성의 원칙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다투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며, 충분재정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에도 재정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 2020 신용한 지방자치론 p.79, 80

▶ ④

06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재정 균형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의 종류가 있다.
- ③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한다.
- ④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입액을 산정할 때 기초 수입액은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 총액의 95%를 반영한다.

- [해설]** ①, ② [O]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 있다.
- ③ [O]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전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한다.
- ④ [X]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 총액의 80%**를 반영한다.

지방교부세법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summary | 교부세의 종류

보통 교부세	① 용도 : 지자체의 기본적 행정수준 유지를 위해 용도의 지정없이 교부되는 일반재원 ② 재원 :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 ③ 산정 :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규모를 기초로 산정
특별 교부세	① 용도 : 국가 역점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보전 등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재정수요 충족하기 위해 교부되는 특정재원 ② 재원 :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3% ③ 산정 : 자치단체가 교부신청 시 교부 목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부, 신청없이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정기준에 따라 지급가능
소방안 전교부 세	① 용도 :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하는 특정재원 ② 재원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③ 산정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부동산 교부세	① 용도 : 지방세였던 종토세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지자체에 교부(일반재원) ② 재원 :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총액 ③ 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10년 개정)

분권교부세의 폐지(2015. 1. 1 폐지)
 교부세는 일반재원이지만 모든 교부세는 일반재원은 아님.

[참고] 2020 신용한 지방자치론 p.184~188



07 주민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 청구요건, 효력 등에 관한 상세규정을 두고 있다.
- ②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주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주민발안에 해당한다.
- ④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회유(placation)는 비참여에 해당한다.

【해설】 ① [X] 주민투표의 대상, 청구요건, 효력 등은 「주민투표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주민투표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투표법 제7조【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X]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및 직원의 공금지출·회계 등 재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이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도 그 감사결과에 불만족 하는 경우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소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O]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주민발안제도의 일종으로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X]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회유(placation)는 형식적 참여에 해당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의 대상, 청구요건, 효력 등에 관한 상세규정을 두고 있다.
- ②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회유(placation)는 형식적 참여에 해당한다.

【참고】 2020 신용한 지방자치론 p.145~153

▶ ③

08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의회 의장은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 ③ 사무처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신분보장 등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해설】 ① [O] 지방자치법 제9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X]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임용권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사무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동법 제92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 1. 별정직공무원
-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③ [O] 동법 제92조 제1항

동법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O] 동법 제92조 제2항

동법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 올바른 지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참고】 2020 신용한 지방자치론 p.102



| 개념 |

09 정부 간 관계에 관한 로즈(Rhodes)의 권력의존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상호의존적인 행위자로 본다.
- ② 정책공동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정부 간 관계에서 교섭과 거래는 조직 간 자원 교환과정의 일종으로 이해한다.
- ④ 지방정부는 법률적 자원, 정보 자원, 물리적 자원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해설】 ① [O] ④ [X] 로즈의 권력의존 모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입법권한과 재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지방정부 보다 법률적, 재정적 자원에서 우위에 있는 반면, 지방정부는 행정서비스 집행의 필수적인 조직자원과 정보의 수집·처리 능력면에서 중앙정부보다 우위에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지방은 중앙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도 아니며, 동등한 관계도 아닌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본다.
③ [O] 정부는 법적 자원, 재정적 자원, 조직자원, 정보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간의 상호작용은 이러한 자원의 교환과정으로 이해한다.

▶ 올바른 지문

- ④ 중앙정부는 법률적 자원, 물리적 자원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정보 자원 X).

【참고】 2021 신용한 지방자치론 p.213

▶ ④

10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초의회의원선거에는 정당공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 ②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시작하였으나, 2014년부터 소선거구제로 전환되었다.
-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④ 광역의회의 지역구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해설】 ① [X] 정당공천제는 기초·광역지방의회 의원선거, 기초·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모두 도입이 되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X]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2005년 개정, 2006년 시행)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X] 제주특별자치도는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②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④ [O] 광역의회의 지역구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참고】 2020 신용한 지방자치론 p.132~136



| 개념 |

1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필요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제고
- ② 광역적 사무의 원활한 처리
- ③ 지방분권의 촉진
- ④ 행정 업무의 전문성 제고

【해설】 ①, ②, ④ [O]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하여 특수한 전문분야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이유는 행정기능이 날로 양적 팽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 **전문화와 기술화를 더하고 있어 공공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광역적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며, 전문분야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통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③ [X]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에 대한 중앙통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지방분권을 저해**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 2020 신용한 지방자치론 p.226

▶ ③

12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임의규정으로 강제력은 없으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광주광역시 북구는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해설】 ① [O] 지방재정법 제39조 제4항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X]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의무화)이며, 예산제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충돌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동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O]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항

동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O]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2004년 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여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되었다.

▶ 올바른 지문

②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강제규정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기능과 충돌할 수 있다.

【참고】 2020 신용한 지방자치론 p.168

▶ ②

13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 ② 교육감을 선출하는 주민직선제는 2002년부터 실시되었다.
- ③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 ④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둔다.

【해설】 ① [O]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② [X] 교육감의 선출방식이 직선으로 바뀐 것은 2007년부터이다.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2007년 이전에는 각급 학교 운영위원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방식이었다.

③ [O] 동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④ [O] 동법 제34조 제1항

동법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 올바른 지문

② 교육감을 선출하는 주민직선제는 2007년부터 실시되었다.

【참고】 2020 신용한 지방자치론 p.87~89

▶ ②

14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론 시도지사도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도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때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은 규약에 포함된다.
- ④ 행정협의회는 회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해설】 ① [O]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회의의 구성】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O] 동법 제165조 제1항 제4호

동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③ [O] 동법 제151조 제2항 및 제3항 제4호

동법 제151조【사무의 위탁】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④ [X] 행정협회의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동법 제153조【협의회의의 조직】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 올바른 지문

④ 행정협회의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참고】 2020 신용한 지방자치론 p.238(부속법령집 p.105, 106)



1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용도와 수행조건 등을 특정하지 않고 교부한다.
- ② 지방세 중 목적세로 분류되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시군세에 속한다.
- ③ 자치구 조정교부금뿐 아니라 시·군 조정교부금도 이전재원의 예이다.
- ④ 시·도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X]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시책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정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는 자금(특정재원)으로 원칙적으로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② [X]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 특별시·광역시·도세(광역자치단체에서 부과)에 속한다.
 - ③ [O]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관내 자치구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조정 제도이며, 시·군 조정교부금은 광역시·도가 관할구역 안의 시·군에 배분하는 재정조정 제도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원을 이전(대가 없이 지급하는 금전적 이동)하여 주는 사례이다.
 - ④ [X] 시·도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용도와 수행조건 등을 특정하여 교부한다.
- ② 지방세 중 목적세로 분류되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에 속한다.
- ④ 시·도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참고】 2020 신용한 지방자치론 p.167, 176, 177, 184, 190



16 사바스(Savas)가 제시하는 공공서비스의 네 가지 공급유형 중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A)'과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B)'의 예로 옳은 것은?

- | A | B |
|-------------------------|-----------------------|
| ① 계약방식(contracting-out) | 셀프 서비스(self service) |
| ② 보조금 방식(granting) | 계약방식(contracting-out) |
| ③ 허가(franchises) | 정부 간 협정 |
| ④ 이용권 지급(vouchers) | 허가(franchises) |

【해설】 A는 계약방식, B는 셀프서비스(자급자족) 방식이다.

- ① **[O]** 계약방식은 협의의 민간위탁으로,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한편, 민간이 결정하고 공급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자원봉사와 같은 자발적 서비스와 자급자족(self service)방식이 있다.
- ② **[X]** 보조금 방식과 계약방식 모두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A유형에 속한다.
- ③ **[X]** 허가(franchises)는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A유형에 속하고, 정부간 협정(협약)은 정부가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방식이다.
- ④ **[X]** 바우처와 허가(franchises) 모두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A유형에 속한다.

summary | Savas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구 분		배열자(arranger)	
		공공(public)	민간(private)
생산자 (producer)	공공 (publ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서비스 (government services) • 정부 간 협약 (intergovernmental agre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응찰 (governmental vending)
	민간 (priv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contract out) • 프랜차이즈(면허, franchise) • 보조금(grant) • 바우처(vouc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market) • 자발적 서비스(자원봉사, voluntary service) • 자급자족(자조 활동, self service)

【참고】 2020 신용한 지방자치론 p.115~116



17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지방채 중 외채의 발행
- ㄴ. 시·도의 지방공사 설립
- ㄷ. 행정구의 명칭 변경과 읍·면·동의 구역 변경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해설】 ㄱ [O] 지방재정법 제11조 2항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X]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설립은 조례로 정하며, 특히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설립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 아닌 협의사항이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ㄷ [X]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 2020 신용한 지방자치론 p.198, p.121, p.65~66



18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장 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① [O] 지방자치법 제149조 2항

지방자치법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② [X] 동법 제149조 7항

동법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X] 동법 제150조 1항

동법 제150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X] 동법 제149조 4항

동법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참고】 2020 신용한 지방자치론 p.230~231



①

19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입연도별 안정성과 균형성이 높으며, 수입의 근거·종류·형태가 단순하다.
- ② 세외수입 중 재산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과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전자는 경상적 수입이고 후자는 임시적 수입이다.
- ③ 세외수입 중 사용료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개별적으로 특수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이다.
- ④ 서비스 이용의 혼잡 방지와 자원 절약의 장점이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해설】 ① [X] 세외수입은 회계연도 간 불규칙성이 강하며, 수입의 근거와 종류 및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② [X] 재산매각수입은 임시적 수입, 재산임대수입은 경상적 수입이다.
 ③ [X] 수수료 수입에 대한 설명이다. 사용료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또는 공용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반대보상으로서 징수하는 공과금이다.
 ④ [O]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하여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혼잡을 방지하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올바른 지문

- ① 수입연도별 불규칙성이 강하며, 수입의 근거·종류·형태가 다양하다.
- ② 세외수입 중 재산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과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전자는 임시적 수입이고 후자는 경상적 수입이다.
- ③ 세외수입 중 수수료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개별적으로 특수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이다.

【참고】 2020 신용한 지방자치론 p.180~183

▶ ④

20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ㄴ.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국고보조사업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해설】 ㄱ [O]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3항

동법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ㄴ [O] 동법 제27조의2 제2항

동법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O] 동법 제27조의2 제1항

동법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참고】 2020 신용한 지방자치론 p.190

▶ ④